[별표 1]<개정 1982.7.12, 1982.12.30, 1984.6.15, 1985.4.1, 1986.6.19>

여행알선업등록기준(제2조관련)

1. 국제여행알선업
   가. 자본금이 2억5천만원이상일 것.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영업소마다 5천만원을 증자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 상법상의 회사로서 주된 사업목적이 여행알선업일 것.
   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항공권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마.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3개이상의 외국여행알선업자와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바.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수가 3개이내일 것. 이 경우 당해업체와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여행대리점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과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에는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통역안내원 자격증 소지자를 7인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아. 국외여행안내원 자격증소지자를 3인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2. 국내여행알선업
   가. 자본금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에는 3천만원이상, 기타지역은 2천만원이상일 것. 다만, 주된 사업장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영업소마다 5백만원을 증자할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주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70제곱미터이상, 기타지역 및 영업소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이상일 것.
   다. 상법상의 회사일 것.
   라. 영업활동구역이 시·군단위일 것.
   마.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여객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바. 국내관광안내원자격증소지자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의 경우에는 7인이상 기타지역은 3인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3. 여행대리점업
   가.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
   나. 사무실의 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일 것.
   다. 상법상의 독립된 회사일 것(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마.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항공권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라.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는 1개의 국제여행알선업체와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한국해외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바. 영업활동구역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일 것.